

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10.12.15 (수) 16:00

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 
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 
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정 현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3. 제안 이유

-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수정(안 제3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9조 등)
- 나. 일부 조항의 신설(안 제6조제5항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